

해외출장복명서

2009년 5월

- 출장국 : 일본(카나가와현, 오키나와현)
- 출장일시 : 2009년 5월18일 ~ 5월22일(4박 5일)
- 출장자 : 안종천 책임연구원

I. 일반 사항

1. 출 장 자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안종천
2. 출장기간 : 2009년 5월 18일(월) ~ 5월 22일(금)(4박 5일)
3. 출장 목적 :
 - 미활용/사용종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선행사례를 조사하여 연구에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활용/사용종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
 - 군사기지 현황
 -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도
 - 기지반환추진체계
 - 기지활용사례
4. 방문 기관 및 장소
 - 일본 카나가와현청 총무부 기지대책과, 오키나와현청 기지대책과
 - 카나가와현 반환 기지 활용사례, 오키나와현 반환 기지 활용사례 및 반환 추진 중인 기지 일대 답사

II. 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람

일자	방문국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면담 및 답사 내용
5/18(월)	일본	서울(김포)-동경(하네다)-카나가와현 요코하마 도착		
5/19(화)	일본	카나가와현청 총무부 기지대책과	大竹准一(과장), 金子教彦(부과장), 太田康(주간), 三森基康(부주간)	- 일본 및 카나가와현의 군사기지현황 - 카나가와현의 군사기지 반환현황 - 적지활용사례
		카나가와현 일대	-	- 카나가와현 반환 기지활용 현장 답사 - 기활용지역 : 공공시설 및 공원
5/20(수)	일본	카나가와-동경-오키나와 도착		
5/21(목)	일본	오키나와현청 지사공실(知事公室) 기지대책과	松田碩志(주간), 儀間寧(주사), 阿波連(주임)	- 오키나와현의 군사기지현황 - 카나가와현의 군사기지 반환현황 - 적지활용사례
		오키나와현 일대	-	- 오키나와현 반환 기지활용 현장 답사 - 기활용지역 : 신도시 지역 - 반환추진예정지역 : 후텐마 비행장
5/22(금)	한국	오키나와-인천 도착		

III. 주요 조사 내용

1. 일본의 군사기지

☐ 기관방문(1)

일 시 : 2009년 5월 19일 오전 10:00 ~ 12:30

장 소 : 카나가와현청 총무부 기지대책과 회의실

면담자 : 기지대책과 大竹准一(과장), 金子教彦(부과장), 太田康(주간), 三森基康(부주간)

☐ 기관방문(2)

일 시 : 2009년 5월 21일 오전 10:00 ~ 12:30

장 소 : 오키나와현청 지사공실(知事公室) 기지대책과

면담자 : 松田碩志(주간), 儀間寧(주사), 阿波連(주임)

☐ 현장답사(1)

일 시 : 2009년 5월 19일 오후 14:00 ~ 18:00

장 소 : 카나가와현 적지활용사례 일대(공공시설, 공원)

☐ 현장답사(2)

일 시 : 2009년 5월 21일 오후 14:00 ~ 18:00

장 소 : 카나가와현 반환추진예정 기지 및 적지활용사례 일대(후텐마 비행장, 신도심)



카나가와현청 사진



카나가와현청 기지대책과 공무원과 함께
군사기지 및 반환기지활용에 대한 면담 장면



카나가와현청 기지대책과 공무원과 함께 한
추가 면담 장면



카나가와현청 기지대책과 공무원의 면담 후
함께 한 기념사진



카나가와 적지활용사례(山下공원) 사진



카나가와 적지활용사례(山下공원) 사진 계속



山下공원의 요코하마항 관광선 부두
(이 부두에서 유람선 및 Sea Bus 운행)



카나가와 적지활용사례(관세소) 사진

사진 1. 일본 카나가와현청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적지(기지)활용 현장 사진



현청소재지인 나하시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청 사진



오키나와현청 기지대책과 공무원과 함께 군사기지 및 반환기지활용에 대한 면담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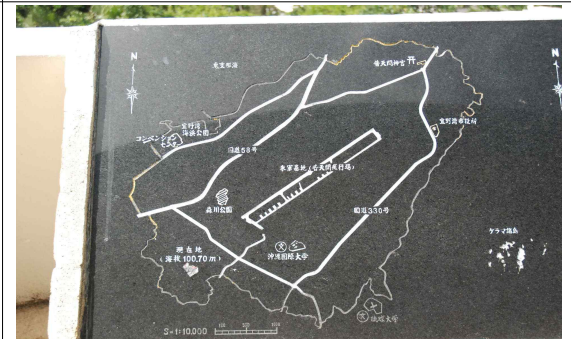
오키나와현청 기지대책과 공무원과 함께 한 면담 장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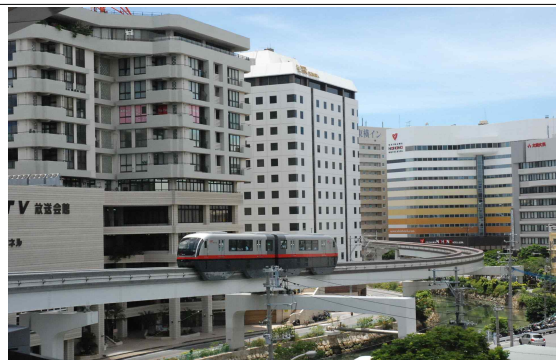
오키나와현청 기지대책과 공무원의 면담 후 함께 한 기념사진



기노완시의 평화도시 선언 기념비



반환추진 중인 후텐마비행장



오키나와현 나하시 도심속의 모노레일



후텐마비행장 주변 일부반환지의 주택지활용

사진 2. 일본 오키나와현의 기관 방문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적지(기지)활용 현장 사진

1) 군사기지 현황

- 일본의 군사기지는 한국전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1961년에는 769.3km²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1961년을 전환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1964년에는 1,000km²대, 1973년에는 1,500km²대, 1988년에는 2,000km²대로 확장됨. 2007년 3월 기준 일본의 군사기지면적은 2,107.4km²이며, 이 중에서 자위대가 전체의 51.5%, 미군기지가 48.5%를 차지함
- 군사기지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 0.4%에서 1961년에는 0.2%로 축소되었지만, 다시 1968년 0.3%, 1973년 0.37%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약 0.55%에 이르고 있음

<표 1> 일본의 군사기지현황(2007년 3월 기준)

구분	군사시설·구역(개)	면적(km ²)	면적비중(%)
자위대	2,675	1,085.4	51.5
본토	2,640	1,078.4	
오키나와	35	6.97	
미군 ¹⁾	133	1,022.0	48.5
본토	99	789	
오키나와	34	233	
합계	2,808	2,107.4	100.0
본토	2,739	1,867.4	
오키나와	69	240	

자료 : 오키나와현 기지대책과, 2008, 오키나와의 미군 및 자위대기지 통계자료집 참조 재작성

- 1960년 이후 일본의 군사기지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자위대 기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1970년대 주일미군기지가 대폭 확장된 것에 기인함
- 군사기지의 소유지 형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미군기지의 경우 국유지가 75.6%, 자위대는 국유지가 88.8%를 차지하여 미군기지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자위대 기지는 전투지휘소 등 부대시설, 연습장, 사격장, 훈련장, 항만, 비행장, 착륙장, 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보급시설, 의료시설, 사무시설 등으로 구성됨
- 자위대의 각 시설이 자위대 기지면적에서 점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연습장이 74.8%, 부대시설 5%, 보급시설 4.4%, 사격장 2.4%, 교육연구시설 2.3%, 통신시설 1.4%, 훈련장 1.3% 등으로 나타나 전체 면적의 78.4%를 연습,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도도부현별 미군시설의 분포현황을 2007년 3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33개 시설 중 오키

1) 2008년 1월 1일 현재 주일미군의 전용시설수는 85개(본토 52개, 오키나와현 33개)이며 총 면적은 309km²(본토 80km², 오키나와현 229km²)에 달하며, 일본 전체 국토면적 대비 0.08%를 차지하고 있음.(자료 : 일본 국방성의 在日米軍施設・區域(専用施設)面積 자료, <http://www.mod.go.jp/>)

나와현(沖繩縣)에 34개 시설이 입지하여 가장 많은 미군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홋카이도(北海道) 18개, 카나가와현(神奈川縣) 15개 순으로 이들 3개 지역에 미군시설이 67개 입지하여 전체의 약 50%를 차지함

- 섬으로 이루어진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와는 달리 카나가와현은 동경도에 인접한 항구지역으로 동경도의 미군시설(7개)을 합할 경우 22개의 시설수를 보유할 정도로 미군에게는 중요한 군사요충지가 되고 있음

<표 2> 일본의 지역별 미군시설현황(2007년 3월 기준)

도도부현명	시설수 (개)	순위	시설면적 (천㎡)	순위	도도부현면적 (km)	군사시설면적 비율(%)	순위
전국	133		1,022,044		377,923.14	0.27	
1 北海道	8	2	344,596	1	83,456.20	0.41	9
2 青森縣	7	5	32,069	7	8,918.44	0.36	10
3 岩手縣	1	14	23,264	9	15,278.77	0.15	13
4 宮城縣	3	10	45,692	6	6,862.08	0.67	7
5 山形縣	1	14	1,308	26	6,652.11	0.02	25
6 茨城縣	1	14	1,078	27	6,095.69	0.02	26
7 群馬縣	1	14	5,796	17	6,363.16	0.09	18
8 埼玉縣	4	8	2,052	22	3,767.09	0.05	20
9 千葉縣	1	14	2,102	21	5,081.83	0.04	21
10 東京都	7	5	16,029	12	2,102.72	0.76	6
11 神奈川縣	15	3	20,895	10	2,415.84	0.86	5
12 新潟縣	1	14	14,080	14	10,789.40	0.13	15
13 石川縣	1	14	1,606	24	4,185.47	0.04	22
14 山梨縣	0	28	45,969	5	4,201.17	1.09	4
15 岐阜縣	1	14	1,626	23	9,768.20	0.02	27
16 靜岡縣	4	8	89,160	3	7,329.15	1.22	2
17 滋賀縣	1	14	24,090	8	3,794.26	0.63	8
18 兵庫縣	1	14	20	28	8,395.47	0.00	29
19 岡山縣	1	14	14,561	13	7,009.37	0.21	12
20 廣島縣	7	5	5,227	18	8,477.92	0.06	19
21 山口縣	2	12	6,602	16	6,112.22	0.11	17
22 福岡縣	2	12	1,415	25	4,844.07	0.03	24
23 佐賀縣	1	14	13	29	2,439.58	0.00	28
24 長崎縣	13	4	4,606	19	4,095.22	0.11	16
25 熊本縣	3	10	16,281	11	6,402.74	0.25	11
26 大分縣	1	14	56,350	4	5,099.16	1.11	3
27 宮崎縣	1	14	9,135	15	6,346.14	0.14	14
28 鹿兒島	0	28	3,409	20	9,043.47	0.04	23
29 沖繩縣	34	1	233,015	2	2,275.28	10.24	1

자료: 오키나와현, 2008년, 오키나와의 미군 및 자위대기지(통계자료집)

- 도도부현별 미군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가 344,596천㎡로 가장 많은 면적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오키나와현이 233,015천㎡를 나타냄
- 도도부현의 총 면적대비 미군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중에서는 오키나와현이 10.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미군이 오키나와를 아시아 뿐만 태평양에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2) 군사기지 문제의 성격

- 일본은 지방자치제의 성숙에 의한 중앙정부의 영향력 약화, 임차계약에 의한 군용지 수용, 대규모 미군 주둔과 일본정부의 지원, 냉전붕괴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이 불명확화 등의 특수상황에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후 일본의 반기지 투쟁은 기지 피해로부터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며, 기타후지(北富士) 연습장내 사격 반대투쟁(1995.5.6)과 스나가와(砂川) 미공군기지의 확장 반대투쟁이 코마쓰(小牧), 요코타(横田), 다치가와(立川), 이타미(伊丹) 등지로 확산되면서 본격화 됨
- 전후 일본 정부는 민유지 및 현유지의 계약거부와 반환요구, 기타용지의 해제 및 정부에 대한 지역개발지원요구, 기지에 의한 소음·폭음제거와 배상요구, 군용차량의 통행저지와 연습 및 훈련의 원활화, 피해보상 예산의 증가 등의 기지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정부는 기지정책으로서 군용지의 확보와 원활한 연습 및 훈련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위민산업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두고 대응함

3) 군사시설 보호정책과 운용

(1) 법체계

- 일본은 기지용지를 확보·운용하고 이에 따른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음
- 시설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된 법규는 자위대 시설의 취득에 관한 훈령을 포함하여 4개이며 민생대책으로서 기지주변대책과 관련된 법률은 방위시설주변의 정비와 관련된 사무소 속에 관한 훈령과 방위시설주변 생활환경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 2개가 있음

- 이 같은 일본의 기지관련 법체계는 1960년대에 그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1970년 일본 정부는 자위대 훈련에 필요한 제한수역의 설정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방위시설주변의 정비에 관한 방위청(현재는 방위성)의 사무소속에 관한 훈령으로 민생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시설주변 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2) 기지주변 대책과 예산

가. 기지주변 대책

- 1966년 7월 ‘방위시설주변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
 - 그간 행정조치에 의해 실시해온 각종 장애에 대한 방지 및 경감조치를 법제화함과 동시에 시정촌이 실시하는 시설주변의 민생안정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군 기지는 지역 개발계획과 상충하게 되었으며 지자체와 주민들은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게 됨
- 1974년 6월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일명, 생활환경법)’ 제정으로 그 간의 미비점을 보완함
 - 동 법률에는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대책으로서 주택방음공사, 녹지대정비, 공공시설 정비 비용으로 특정방위시설 주변정비 조정교부금 등이 새롭게 포함됨
 - 동 법률은 ‘일본 주둔 미군 등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1953)’과 ‘방위시설 주변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66)’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기지대책에 관한 완결판으로 평가됨
 - 동 법률은 장애방지공사의 조성(3조), 비행장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4-7조), 민생안정 시설의 조성(8조), 특정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9조), 손실보상(13-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은 동 법률을 근거로 항공기 소음 등을 포함한 기지 주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방위시설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짐
 - 방위시설청은 1962년 방위청 건설본부와 조달본부를 통합한 조직임
- 방위시설청은 고유의 업무인 방위시설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도모하고, 주변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제시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연습장, 비행장, 항만 등으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업무와 함께 이의 관리도 관장함
- 군부대나 시설이 소재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관장함
-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사용할 건물과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함께 미군부대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업무도 관장함

<표 3> 일본 정부의 군사기지 대책 연표

구분	내용
미군의 불법행동에 의한 손실보상(1952)	-근거: 민사특별법(1952) -미군에 의한 불법행동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배상조치 실시 - 단, 합법적 행동은 제외
어업활동제한에 따른 보상(1952)	-근거 : 어업조업제한법(1952) -주일미군이 실시한 해상연습 등에 의해 발생한 어업 경영상의 손실을 일본 정부가 보상
미군의 적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1953)	-근거 : 주일미군에 의한 특별손실보상법(1953) -미군의 적법한 행동에 의해 발생한 농림어업 등 사업경영상의 손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
기지교부금(1957)	-근거 : 국유제공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기지 교부금: 1957) -미군에 제공된 고정자산, 자위대가 사용하는 비행장, 연습장, 탄약고 등은 국유재산으로 분류 -시정촌은 이들 국유 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세 부과 불가, 세수확보곤란 -일본 정부는 재원보전 차원에서 이들 고정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정촌에 대해 동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시정촌 조성 교부금
조정교부금(1970)	-근거 : 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정교부금 교부요령(1970) -지방세법 임시특례법(1952)에의거 시정촌은 미군소유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주민세, 전기가스세 등 시정촌세도 부과 불가 -또한, 시정촌은 기지밖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과 군속, 가족은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도로, 수도, 쓰레기처리, 분뇨처리,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그러나 비과세 조치에 의해 감세액 및 재정수요의 증대에 대한 보전 조치가 없어 시정촌에 재정부담 가중 -따라서 일본 정부는 시정촌이 직면한 세수 및 재정상의 영향을 고려 예산범위내에서 교부금을 제공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등(1974)	-근거 : 방위시설주변생활환경정비법(1974) -일본 정부는 특손법(1953)을 제정하는 등 보상제도를 확립하였지만, 여전히 기지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기지대책의 필요성을 인정 -미군 및 자위대에 의한 장애 및 피해에 대해 행정조치에 의해 소음방지, 방재공사, 도로정비, 안전조치사업 등을 추진, 그러나 기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미흡 -1966년 방위시설 주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조치로 처리해 오던 각종 장애에 대한 방지와 경감조치를 취해옴 -그러나 1965년 이후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기지주변이 도시화되고 지역개발계획과 경합하게 되고,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종전의 조치로는 불충분 -따라서 일본 정부는 종전의 조치에 더하여 군용 공항주변소음대책으로서 주택방공사, 녹지대설치 등 공용시설의 정비에 총당될 비용으로서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 조정교부금을 신설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2001,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 연구, p.146

<표 4> 방위시설주변 생활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장해요인	목적		시설	구체적 사업 내용
미군 및 자위대활동	장해의 방지/경감	항공기 이외	장해방지공사의 조성 (3조 1항)	하천, 용수 및 배수로, 도로, 댐, 사방둑, 급/배수 시설 등
		항공기 소음	방음공사 조성(3조 2항)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 의료시설(병원 진료소 등)
		항공기 소음장해	주택방음공사(4조)	제1종 구역
			이전보상(토지수용, 신이주주택지조성)(5조)	제2종 구역
			녹지대 정비 등(6조)	제3종 구역
시설설치/ 운용	토지무상대여		매입한 토지를 지방공공단체에 무상 대여(7조)	제2종 구역
	장해 완화		민생안정시설조성(8조)	방송시설, 도로, 양호시설, 소방시설, 공원, 수도,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교육시설, 농림어업시설 등
	생활환경 및 개발장해 완화		특정 방위시설주변 정비 교부금(9조)	교통/통신시설,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환경위생 시설, 교육 문화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등
	피해보상		손실보상(13조)	농림어업 사업자 손실 보상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2001,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 연구, p.148

<표 5> 방위시설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목적	시책	사업내용
소음장해 방지	방음공사조성	- 소·중학교, 유치원등 교육시설, 병원·진료소등 의료시설, 보육소, 노인서비스센터·특별양호노인가구 등 사회복지시설
	이전보상 등	- 건물 등에 대한 이전 등의 보상 - 토지의 매입 등
	녹지대정비	- 식수, 초지조성 등
소음이외 장해 방지	장해 방지 위한 공사조성	- 하천개수, 배수로, 댐, 연못, 펌프장, 도로, 하수도, TV방송 공동수신시설 등
생활·사업상의 장해 완화	민생안정시설 조성	- 학습 등 공용시설 - 쓰레기·분노처리시설, 소방시설, 공원, 도로, 녹지, 공민관, 도서관, 노인복지센터, 양호노인가구 등 - 농업용시설 - 어업용시설
주변지역경관 개선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 조정교부금교부	- 교통·레크리에이션·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용시설의 정비

자료 : 일본 국방성의 防衛施設と周辺地域との調和を図るための施策 자료(<http://www.mod.go.jp/>)

나. 지방재정지원

- 일본정부는 기지가 소재하는 시정촌에 대해서는 세수감소나 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수요가 증대되는 것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기지교부금(조성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제공하고 있음
- 기지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일반세입으로써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위시설청이 제공하는 특정방위시설 교부금과는 다름

(1)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 조정교부금

- 생활환경정비법 제9조는 공항, 포사격장 등 특정방위시설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 방위청 예산으로 이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지원은 기지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과는 달리 시정촌의 일반 재원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교통 및 통신시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지정된 공공 시설의 건설에 쓰도록 하고 있음

(2) 기지교부금과 조정교부금

- 방위청 예산과는 별도로 군사기지가 소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지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정하고 있음
- 기지교부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이 소재하는 시정촌조성교부금에관한법률(1957)에 의거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고정자산 가운데 미국에 제공된 고정자산과 자위대에 제공된 고정자산의 장부가격에 따라 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정촌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 이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처럼 일반재원으로써 매년 교부되고 있음
 - 교부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첫째,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공작물 등 모든 자산, 둘째,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및 연료저장용 토지, 건물, 공작물 등과 자위대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은 시정촌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훈련장의 경우는 면적이 방대하고 탄약고 등은 위험시설로 인하여 주변 토지이용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조성교부금의 대상이 됨
 - 조성교부금의 배분방식은 기지교부금 예산 총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상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 액을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대상자산의 종류(비행장, 훈련장), 용도(초음속 비행장, 사격장 등), 방위시설 면적 비율 및 소음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한편, 1970년도부터 '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정교부금(1970년 자치성 고시 제224호)' 제도가 만들어져, 일본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제공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은 미군자산(미군이 건설,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해 제공되며, 이 가운데 건물은 사무소, 숙소, 후생복지시설 등이며 공작물에는 통신시설, 활주로, 조명시설 등이 포함됨
-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조정 교부예산 총액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군 자산액으로 나누어 배분, 나머지 1/3은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조치에 의해 시정촌이 감수하고 있는 재정상 부담을 고려하여 배분함. 구체적으로는 미군 및 방위시설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음

(3) 반환도로 정비 사업비 교부

- 일본 정부는 기지교부금과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군사기지에서 해제되어 반환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함
- 반환도로 정비 조성금이란 오키나와현 내에서 주둔군이 반환한 시설 및 구역내의 도로로써 시정촌이 반환되는 도로를 매입하여 반환 당시의 상태로는 이를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공공도로로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매입 경비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시정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대상 경비의 범위는 도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용지비, 도로정비사업에 부가해서 필요한 지방사무비 등이며 보조비율은 100%로써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액이 제공되고 있음

다. 군사시설주변대책사업 보조금 현황(2008년)

- 2008년 현재 군사기지가 입지한 지역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은 1차, 2차에 걸쳐 총 6백 31억 엔(한화(환율 1,300원)로 약 8천 2백억원)에 달함
- 부문별로는 조정교부금이 가장 많은 136억엔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조성보조금(20.3%), 일반방음보조금(20.3%), 일반장해보조금(17.5%) 등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됨
- 지역별로는 오키나와현에 전체 보조금의 15.8%가 지급되었으며, 카나가와현에는 6.0%가 지급됨

<표 6> 2008년 주변대책사업 관련 보조금지금 현황(단위 : 100만엔)

지역명	일반 장해	공동 수신	일반 방음	일반 조성	방음 조성	도로 개수	주변정 비통합	조정 교부금	재편 교부금	일미특별행동 위원회(SACO) 교부금	이전 조치	합계
카나가와현	85		1,055	730	99	137		1,361	288			3,755
오키나와현	858		1,509	3,820	58	617		2,260	562	308		9,992
기타지역	10,078	226	9,480	8,288	1,172	7,598	499	9,978	1,885		152	49,356
합계	11,021	226	12,044	12,838	1,329	8,352	499	13,599	2,735	308	152	63,103
비중(%)	17.5	0.4	19.1	20.3	2.1	13.2	0.8	21.6	4.3	0.5	0.2	100.0

자료 : 일본 국방성의 주변대책사업 보조금배분도도부현별내역 자료(<http://www.mod.go.jp/>)

2. 카나가와현의 기지현황 및 적지이용 사례

1) 기지현황

- 2006년 말 현재 카나가와현에 입지한 미군기지는 총 15개로, 전국 134개의 11.2%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15개 시설의 면적은 20,895천㎡로 전국 면적의 2.0%를 차지하여, 기지수의 비율보다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이는 카나가와현에 입지한 미군기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군기지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평화조약이 맺어진 1952년 4월 28일 162개 기지가 카나가와현에 입지하였지만, 점차 기지수가 감소하여 1960년에는 58개, 2000년에는 16개, 2006년에는 15개로 축소되어 1952년 대비 무려 90.7%나 감소함. 동 기간의 전국적인 미군기지수의 변화율은 95.3%가 감소함
- 미군기지의 면적에서도 동 기간에 카나가와현은 41.7%가 감소하였으며, 전국적인 면적은 24.5% 감소하여 카나가와현의 면적 감소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 현재 입지해 있는 15개 시설의 군별 유형을 보면, 해군관련 기지가 11개, 육군관련 기지가 4개임
- 기지시설은 통신소, 창고, 주택, 저유시설, 비행장, 사격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카나가와현

에서 기지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지는 아쓰기(厚木) 해군비행장으로 비행장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가 가장 큰 기지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

- 미군기지에 속한 종업원은 모두 9,039명임

<표 7> 미군제공시설의 연도별 추이

연도	카나가와현				전국	
	시설수	비율	시설면적(천㎡)	면적비율	시설수	시설면적(천㎡)
1952	162	5.7	35,816	2.6	2,824	1,352,636
1960	58	30.9	31,253	10.0	188	311,969
1970	36	30.8	25,397	8.3	117	306,456
1980	24	20.5	22,761	4.7	117	482,686
1990	19	13.3	21,443	2.2	143	984,672
2000	16	11.9	21,427	2.1	134	1,010,214
2006	15	11.2	20,895	2.0	134	1,021,850

자료 : 카나가와현, 카나가와현의 미군기지, 2007, p. 292

<표 8> 카나가와현의 군사기지 현황(2009.3 현재)

기지시설명	군별	토지면적(천㎡)	종업원수(명)	소재지
根岸주택지구	해군	429	179	横浜市(요코하마시)
横浜북부도크	육군	550	183	横浜市
富岡창고지구	해군	29	0	横浜市
上瀬谷통신시설	해군	2,422	36	横浜市
深谷통신소	해군	774	5	横浜市
鶴見저유시설	해군	184	88	横浜市
厩妻창고지구	해군	815	141	横須賀市(요코스카시)
横須賀해군시설	해군	2,363	4,862	横須賀市
浦郷창고지구	해군	194	54	横須賀市
池子주택지구및해군 보조시설	해군	2,884	140	逗子市(즈시시)、横浜市
相模종합보급창	육군	2,144	589	相模原市(사가미하라시)
相模原주택지구	육군	595	106	相模原市
座間캠프	육군	2,346	1,616	相模原市、座間市(자마시)
厚木해군비행장	해군	5,069	1,040	綾瀬市(하루카시)、大和市(야마도시) 、海老名市(에비나시)
長坂소총사격장	해군	97	0	横須賀市
합계(15개시설)		20,895	9,039	

자료 : <http://www.pref.kanagawa.jp/>

2) 기지반환현황

-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1971년부터 1991년까지 13개의 미군기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반환되었는데 그 면적은 12.05km²로 집계되고 있음. 이렇게 반환된 군용지는 도

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 학교,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용됨. 물론, 반환된 도쿄 통신소는 일본전신전화(NTT) 건물로 활용하였으며, 산노우 호텔부지는 원소유자에 반환됨. 그리고 하네다 우편소는 국토교통성에, 미나미토리시마 통신소 부지는 해상보안청에 각각 관리권을 이관함

- 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의 경우, 1975년부터 2005년 말까지 31년간 총 11개에 이르는 기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반환됨. 반환토지의 면적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km²이며,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공공 및 공익시설로 이용됨
- 한편, 카나가와현(神奈川県)의 요코하마시(横浜市)는 반환 군용지에 대한 이용 방침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혜를 모아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한다는 기본 방향하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방침을 담고 있음²⁾
 - 즉, 첫째, 군용지로 편입될 당시의 역사적 경위를 고려한다는 것임. 그리하여 반환되는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경우에 해당 토지가 수용될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경위를 고려하여 시민의 고난과 추억을 적지이용에 반영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책으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임

<표 9> 도쿄도의 반환 미군 미군기지 이용 현황(2006.1.1 현재)

시설명	면적(m ²)	반환일자	반환지 이용
캠프오즈	122,404	'71.10	공원, 도로, 양호시설, 의료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하네무라 학교지구	91,513	'71.10	공원, 초등학교, 양호학교, 실내폴장
무사시노주택지구	133,079	'73. 1	공원, 양호학교부속시설, 시청사, 도로
캠프아사카	351,634	'73. 6	초등학교, 양호학교, 중/고교, 도로, 복지시설, 공원, 사법연수소
야마토공군시설	343,537	'73. 6	고교, 주택, 상업시설, 수도시설, 도로, 공원, 전차기지, 경찰교양훈련시설
도쿄통신소	건물	'73. 8	통신회사(NTT)
그랜드하이츠주택지구	1,831,963	'73. 9	주택, 공원, 초/중.고교, 수도시설, 청소공장, 도로
칸토무라주택지구 및 조후 비행장	1,981,226	'73. 3	도로, 교양학교, 사회복지시설, 비행장, 시민스포츠광장, 대학스타디움
후츄공군시설	592,158	'75. 6	공원, 중학교, 도로, 문화홀
타치가와비행장	5,732,568	'77.11	공원, 방재기지, 도로, 변전소, 가스공급시설, 운동장, 모노레일차량기지
하네다우편소	1,094	'80. 4	국토교통성에 소관변경
산노우호텔	12,989	'83.10	소유자에 반환
미나미토리시마통신소	854,019	'93.10	해상보안청에 소관 변경
계	12,048,184		

자료: 東京都, 『都内の米軍基地』 (www.chijihon.metro.tokyo.jp/kiti/tonai/tonaikiti.htm).

2) 横浜市, 『米軍施設返還跡地利用指針』(平成18年6月), pp.2~3.

<표 10> 카나가와현의 반환지 이용 상황

시설명	면적㎡	반환일자	반환지 이용
미 육군 출판센터	57,040	'75.10	고교, 평화공원
요코하마 베이커리	6,200	'77. 9	소유자에 반환
요코하마차펠센터	8,900	'78. 6	공원
미 육군의료센터	197,437	'81. 4	고교, 주택, 복합문화시설
요코하마 해병 주택지구	705,000	'82. 3	주택, 하수처리장
신 야마시타 주택지구	61,000	'82. 3	환경정비사업용지, 공공주택
해군 병사 클럽	8,500	'83.10	고층 빌딩(베이스쿠에아요코스카)
통신시설	9,200	'93. 8	민유지는 소유자에 반환, 현유지는 현유림
요코하마 냉장창고	20,300	'94. 4	도로 등
카나가와밀크플랜트	10,499	'00. 3	보육원, 공원 등
저유시설	526,205	'05. 12	도시공원(계획 중)
계	1,610,281		

자료: 神奈川県基地対策課, 『神奈川県の米軍基地』(神奈川県: 株式会社礎、平成19年 8月), p.20.

- 둘째, 반환지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임. 반환되는 기지는 오랫동안 기지로 사용되는 가운데 주변지역은 이용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 그 결과 반환되는 시설은 현 시점에서는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귀중한 공간자원이 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임. 그리하여, 반환지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가치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지를 분할하지 않고 대규모의 용지로서 그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임
- 셋째,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발전시켜간다는 것임. 현재, 요코하마 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의 진행, 지구규모의 환경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증가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규모 반환시설을 이용하여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리하여, 반환지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다는 방침을 설정함

3) 기지문제 관련 협의회

(1) 섭외관계 주요 도도현 지사 연락협의회(都道府県知事連絡協議会)

○ 설립목적

- 미군제공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도도현의 상호연락협조를 밀접하게 하여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기지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지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1962년에 설립됨

○ 회원(14개 도도현)

- 北海道、青森縣（副會長）、茨城縣、埼玉縣、千葉縣、東京都、神奈川縣（會長）、山梨縣、静岡縣、廣島縣、山口縣、福岡縣、長崎縣（副會長）、沖縄縣（副會長）

○ 활동상황

- 매년 국가에 대하여 기지대책에 관한 요망서(基地對策に關する要望書)를 제출하여, 기지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필요시 긴급요청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2005년에는 일미지위협정 심포지움 개최, 일미지위협정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함

(2) 카나가와현 기지관계 현시연락협의회(県市連絡協議会)

○ 설립목적

- 미군기지에 관계되는 9개 시와 현들이 모여, 기지문제에 대해 현과 관계시가 밀접하게 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기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4년에 설립됨

○ 회원(현 및 9개 시)

- 神奈川縣、横浜市、横須賀市、藤澤市、逗子市、相模原市、大和市、海老名市、座間市、綾瀬市

○ 활동상황

- 미군기지 입지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기지관련 요구사항, 행정요구사항, 사건 및 사고 발생 관련 요구사항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기지문제 대책추진을 위하여 기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기지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미군기지의 정리 및 반환 촉진, 기지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9월경에는 기지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의 현내 해당 도시로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의 활동상황(2006년~2008년)

- 기지문제에 해결 요구(미군기지의 정리·축소·조기반환 추진, 항공기소음 해소, 주택방음공사 등 소음대책 해결, 기지교부금·조정교부금제도 및 각종지원책의 충실한 이행 등), 기지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요구, 기지관련 재정적 지원 요구

(3) 아스키(厚木)기지소음대책협의회³⁾

○ 설립목적

- 아스키기지는 야간의 이착륙훈련으로 항공기소음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현내의 행정과 의 회관계자가 상호 협조하여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설립됨

○ 회원

- 행정관계 : 神奈川縣知事、横浜市長、藤澤市長、茅ヶ崎市長、相模原市長、大和市長、海老名市長、座間市長、綾瀬市長、町田市長
- 의회관계 : 神奈川縣議會議長、縣議會議員(若干名)、横浜市議會議長、藤澤市議會議長、茅ヶ崎市議會議長、相模原市議會議長、大和市議會議長、海老名市議會議長、座間市議會議長、綾瀬市議會議長、町田市議會議長

○ 활동상황

- 내각총리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주일미국대사, 재일미군사령관, 재일미해군사령관, 아스키항공시설사령관, 제5항모항공단사령관 등에게 항공기소음해소와 관련하여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주 요청, 소음문제 해결의 적극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보냄
- 기지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7월에 미군기지의 정리 및 반환 촉진, 기지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9월경에는 기지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의 현내 해당 도시로 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의 활동상황(2006년~2008년)

- 기지문제에 해결 요구(미군기지의 정리·축소·조기반환 추진, 항공기소음 해소, 주택방음공사 등 소음대책 해결, 기지교부금·조정교부금제도 및 각종지원책의 충실한 이행 등), 기지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요구, 기지관련 재정적 지원 요구

3. 오키나와현의 기지현황 및 적지이용 사례

1) 기지형성 배경

- 오키나와는 태평양전쟁에서 철의 폭풍이라 불린 폭탄투하와 폭격에 의해 섬이 초토화되었고, 미일양국의 병사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포함하여 20만 명이 사망함
-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일본 본토로의 진공(進攻)의 거점으로 계속하여 신규 기지를 건

3) 담당자 면담 결과 아스키 해군비행장의 소음관련하여 연간 5,0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함

설합

- 그 결과 광대한 미군기지가 형성되었고, 미군에게 있어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요석(要石) 역할을 하게 됨
-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 1952년 조약의 발효에 의해 미일간 전쟁은 종료되었지만, 본조 3조에 의해 오키나와는 미국의 통치하에 놓여 27년간 통치를 받은 후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됨
- 일본으로 반환 후에도 많은 미군기지가 그대로 일미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계속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기지현황

- 2007년 현재 오키나와현의 41개 시정촌에 입지한 미군기지는 총 34개이며, 면적은 233km²로 오키나와 총면적의 약 10.2%를 차지함
 - 군인(22,720명), 군속(1,390명), 가족(24,380명)을 합한 미군 관련 인구가 48,490명이나 되며, 특히, 주일미군 전체 군인수(32,803명)의 약 69.3%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음
 - 군인수(22,720명)는 해병대(13,200명), 공군(6,700명), 육군(1,600명), 해군(1,2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별로는 34개 시설 중 해병대가 15개로 가장 많고 그 외 공군(6개), 해군(5개), 육군(4개), 공용(3개), 기타(1개)로 구성됨
-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수는 전국(133개) 대비 25.6%이며, 면적은 전국 대비 22.8%를 차지

<표 11>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현황(2007년 3월 현재)

구분	전국		오키나와현		본토	
군사기지수	133	100.0%	34	25.6%	99	74.4%
면적(ha)	102,204.5	100.0%	23,301.5	22.8%	78,903.0	77.2%

자료: 오키나와현지사공실기지대책과, 2008,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p.11

- 오키나와현 내에서 미군기지의 분포를 보면, 북부지구에 16,350.2ha가 미군기지로 활용되어 현 전체 미군기지 면적의 70.2%를 차지하고 있음
- 소유형태별로는 국유지(34.4%), 민유지(32.8%), 시정촌유지(29.2%), 현유지(3.5%) 순으로 나타나 민유지의 비율이 30% 이상이나 되고 있음

- 34개 시설의 용도별 구성에서는 연습장이 15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고(4개), 병사(兵
舎, 4개), 통신(4개), 항만(港灣, 3개), 비행장(2개), 의료(1개), 기타(1개) 순으로 구성됨

<표 12> 오키나와현의 소유형태별 미군기지현황(2007년 3월 현재, 단위 ha, %)

구분	국유지	현유지	시정촌유지	민유지	합계
북부지구	7,573.4	806.3	5,704.0	2,266.5	16,350.2
중부지구	423.8	9.0	1,077.2	5,149.4	6,659.4
남부지구	21.0	3.5	30.4	145.0	200.0
宮古지구	-	-	-	-	-
八重山지구	4.1	-	-	87.4	91.5
합계	8,022.5	818.9	6,811.7	7,648.4	23,301.5
비중	34.4	3.5	29.2	32.8	100.0

자료: 오키나와현지사공실기지대책과, 2008,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p.11



<그림 1>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 현황도

2) 미군기지 관련 문제

-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추이를 보면, 2003년 총 89건, 2004년 77건, 2005년 93건, 2006년 58건, 2007년 75건 등으로 매년 5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항공기 관련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표 13>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항공기관련	58	53	63	32	36
유탄 등	0	0	0	0	0
폐유 등의 유출	3	8	4	2	4
화재	11	7	9	8	20
기타(연습)	5	4	11	4	3
기타 사건·사고	12	5	6	12	12
합계	89	77	93	58	75

자료: 현지 오키나와현의 브리핑 자료(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황과 과제)

- 미군에 의한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03년 112건에서 2007년에는 63건으로 나타나 최근에 범죄가 다소 낮아지고 있음
- 유형별로는 절도범이 가장 많음
- 그 외 문제로는 항공기 소음문제, 유해 폐기물 문제, 원자력군함의 기항에 따른 문제 등임

<표 14> 미군 구성원에 의한 범죄 검거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홍악범	7	1	2	3	6
난폭범	11	12	7	10	2
절도범	48	23	28	21	27
지능범	11	3	7	9	14
풍속범	4	4	1	0	0
기타	31	16	21	14	14
합계	112	59	66	57	63

자료: 현지 오키나와현의 브리핑 자료(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황과 과제)

3) 반환토지의 규모와 이용 실태

- 2008년 3월 현재,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의 75%가 집중되어 있으며, 주오키나와 미군기

지는 현 면적(도서지역 포함)의 10.2%, 오키나와 본도 면적의 18.4%를 점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반환된 적지(跡地)에 대해서는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 새로운 산업의 진흥, 건전한 도시형성, 교통체계의 정비,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재생 등 오키나와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공간으로서 종합적이고,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오키나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환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음

- 반환된 미군기지는 토지정리사업, 토지개량사업 등 공공사업과 민간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주택지 확보, 부족한 공공시설의 건설, 농지확대 및 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음
- 오키나와의 경우, 1961년부터 2007년 3월까지 반환된 미군기지는 123.026km²이며, 이들 반환된 토지는 주로 공공사업, 개인 및 기업 이용, 자위대 이용, 미군에 재제공, 보전, 이용곤란 등으로 이용됨. 즉,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용으로 이용된 반환지는 전체의 35.9%로 가장 많으며, 개인과 기업에 의해 개발된 면적은 15.6%임. 그리고 반환된 토지 중 4.0%는 자위대가 군용지로 이용하였으며, 미군에게 다시 제공된 면적은 2.6% 등 군사용으로 사용된 비율은 6.6%에 이르고 있음. 또한, 반환토지 가운데 28.7%는 보전림으로 조성되었으며, 13.3%는 아직 활용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표 15> 오키나와 주둔 미군용 토지의 반환과 이용 상황(1961~2007)

구분	계	공공개발	개인/기업 활용	자위대 활용	미군제공	보전	미 이용
면적(km ²)	123.026	44.062	19.199	4.865	3.2	35.295	16.405
비율(%)	100.0	35.9	15.6	4.0	2.6	28.7	13.3

자료: 沖縄県知事公室 『駐屯軍用地跡地利用の状況』 (www.pref.okinawa.jp/kichit_ochi/index.htm) 참조

- 구체적으로 공공사업 가운데, 도심과 떨어진 북부지역에서는 주로 토지개량, 농지개발, 수자원, 도로정비 등에 활용되었으며, 도심과 가까운 지역인 중남부지역에서는 택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정비사업 등에 사용됨. 그리고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에서는 토지개량사업과 농업기반정비사업용으로 재활용됨
- 또한, 보전지역으로의 이용은 주로 도시와 이격된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자연환경보전림, 수자원함양림, 재해방비림 등 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그리고 경사가 심하여 지형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토지, 소규모 섬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이용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토지, 소규모 토지로서 활용이 부적합한 토지 등은 반환상태 그대로 이른바 이용이 곤란한 토지로 분류되고 있음



<그림 2> 적지활용 사례(나하 신도심)

- <그림 2>은 오키나와현에서 적지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오키나와현의 현청소재지인 나하(那覇)시에 위치한 牧港주택지구로 1945년에 미국으로 강제 접수된 후, 공군과 육군 등 군속용의 주택지로 활용된 후, 1964년부터 1987년까지 점진적으로 반환되어 신도심으로 개발한 사례를 나타냄
- 총 면적은 1,951천㎡로, 모두 반환되었으며 최근에는 DFS 갤러리아(도심 면세점)를 비롯하여 오키나와현립 미술관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도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3> 적지활용 사례(후텐마비행장 주변 주택지)

- <그림 3>은 오키나와현 기노완시(宜野湾市)에 위치한 후텐마비행장(普天間飛行場)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오키나와에서 후텐마비행장의 전면 반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오키나와는 본토와 비교하여 상대적 낙후가 심하다는 인식하에, 도심에 위치한 후텐마비행장을 산업단지 등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총 면적은 5,171천㎡로, 이 중에서 7.1%인 366천㎡를 1962년부터 1996년까지 부분적으로 반환받은 상태임. 아직도 미반환 면적이 4,805천㎡에 이르고 있으며, 기존에 반환받은 부지는 비행장 주변의 일부 부지로 반환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주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SACO⁴⁾최종보고 이후 이전에 따른 전면반환에 미군과 합의를 보았지만, 아직 전면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키나와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반환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4) 반환토지 이용관련 조직 및 제도

- 한편,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에서 반환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우선, 1999년 12월 28일 일본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둔군용지적지이용 촉진 및 원활화 등에 관한 방침”을 제정함.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2월에는 동 방침에 근거하여 내각내정심의실 오키나와담당실에 “적지대책(跡地對策) 그룹”을 신설하고 그룹 리더를 배치하는 한편, 15개 관계부처과장과 오키나와현진흥개발실장으로 구성된 “적지대책 프로젝트팀”을 신설함(<그림 4> 참조)
-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일본정부는 오키나와현청에 오키나와현청(沖縄縣廳)의 관련 부장 및 국장을 중심으로 한 “오키나와현 군용지적지이용촉진연락회의”를 재발족시키는 한편, 기노완시(宜野灣市)에는 기노완시청 관련부장 및 국장을 주축으로 한 “기노완시군용지적지개발 프로젝트팀”을 설치함. 이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를 완비함
- 이어서 2000년 5월에는 적지이용을 촉진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위해 “적지대책준비 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내각관방장관, 오키나와(沖縄) 개발청장관, 오키나와현(沖縄縣) 지사, 그리고 기노완시(宜野灣市) 시장이 참석하도록 함.⁵⁾ 아울러 동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위해 협의회 예하에 내각관방 부장관이 주재하는 연락회의를 둠.
- 또한, 2년 뒤인 2002년 3월 31에는 “오키나와진흥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국가, 현, 그리고 적지관계시정촌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적지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지이용의 기본원칙, 재정적 지원, 대규모적지에 대한 국가의 대책과 방침, 대규모 적지 및 특정 적지에 대한 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⁶⁾ 동법은 반환되는

4)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Facilities and Areas in Okinawa)는 1995년에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든 오키나와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로 현재는 명칭이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로 변경됨. SACO에서 1996년 만든 최종보고서에는 후텐문비행장의 전면 반환 등 총 11개 시설, 총 5,002ha에 달하는 토지의 반환 뿐만 아니라 소음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일부 시설은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일부는 반환 추구 중에 있음

5) 内閣部, 『跡地對策準備協議會設置要綱』(2000. 5.31).

토지를 “대규모적지(大規模跡地)”와 “특정적지(特定跡地)”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규모적지(대규모진흥 거점 주둔군용지 적지)”란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상복구와 개발에 장기간이 예상되며, 오키나와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거점이 되는 토지로서 그 규모가 3km²이상인 시가지와 인접한 토지로 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특정적지(특정진흥주둔군용지 적지)”란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원상회복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가 오키나와 진흥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0.05km² 이상인 반환지로 정하고 있음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沖繩振興特別措置法, 平成十四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十四号)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 : 오키나와가 놓여 있는 특수한 제사정에 비추어서, 오키나와진흥의 기본이 되는 오키나와진흥계획을 책정하고, 기본적인 사업을 촉진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오키나와의 종합적인 계획적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오키나와의 자립적개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오키나와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법은 총 11장 120조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제7장(제95조~104조)에서 주류군용지 적지이용의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가 다루어지고 있음. 동 법의 총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총칙

제2장 오키나와진흥계획

제3장 산업진흥특별조치

제4장 고용촉진, 인재육성, 그 외 취업의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

제5장 문화·과학기술의 진흥 및 국제협력 등의 촉진

제6장 오키나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

제7장 주류군용지 적지이용의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

제8장 오키나와진흥기반정비를 위한 특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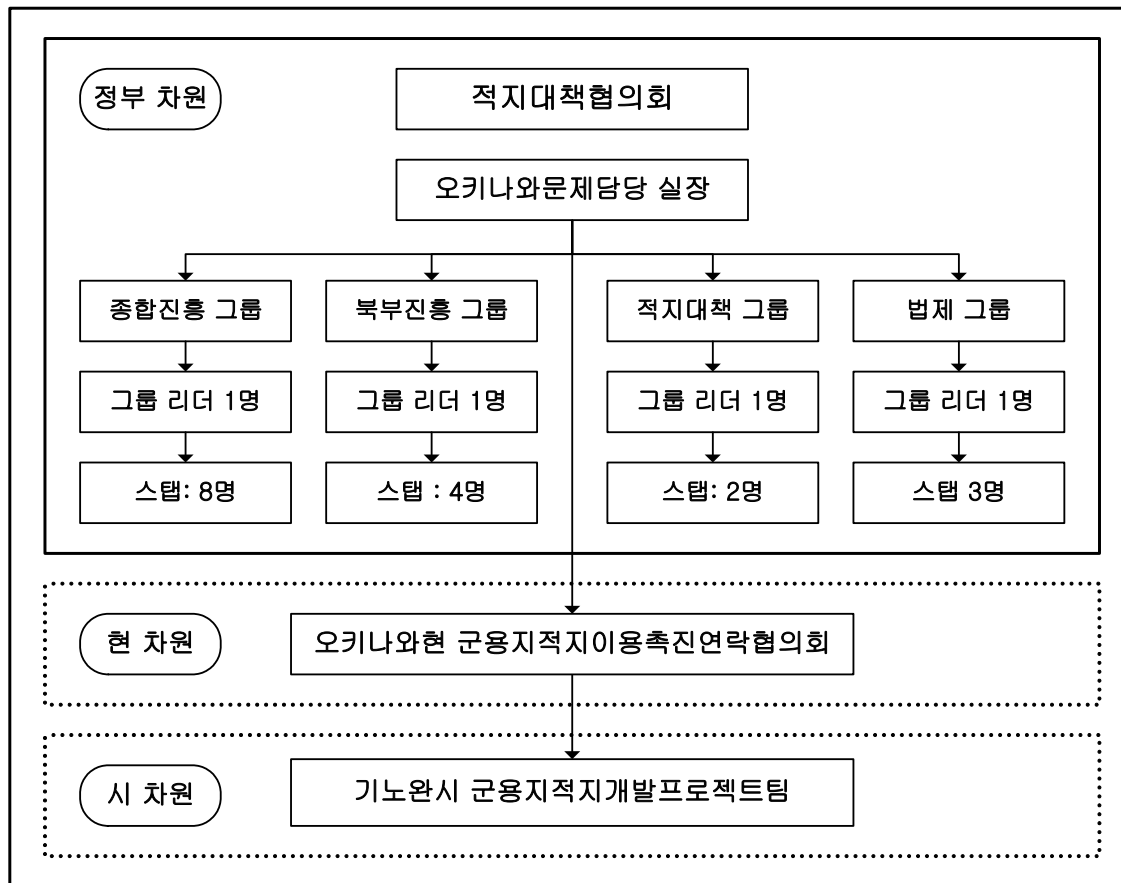
제9장 오키나와진흥심의회

제10장 잡칙(雜則)

제11장 벌칙

부칙

6) 오키나와 진흥특별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지닌 한시법임(內閣部, 『沖繩振興特別措置法』(2002.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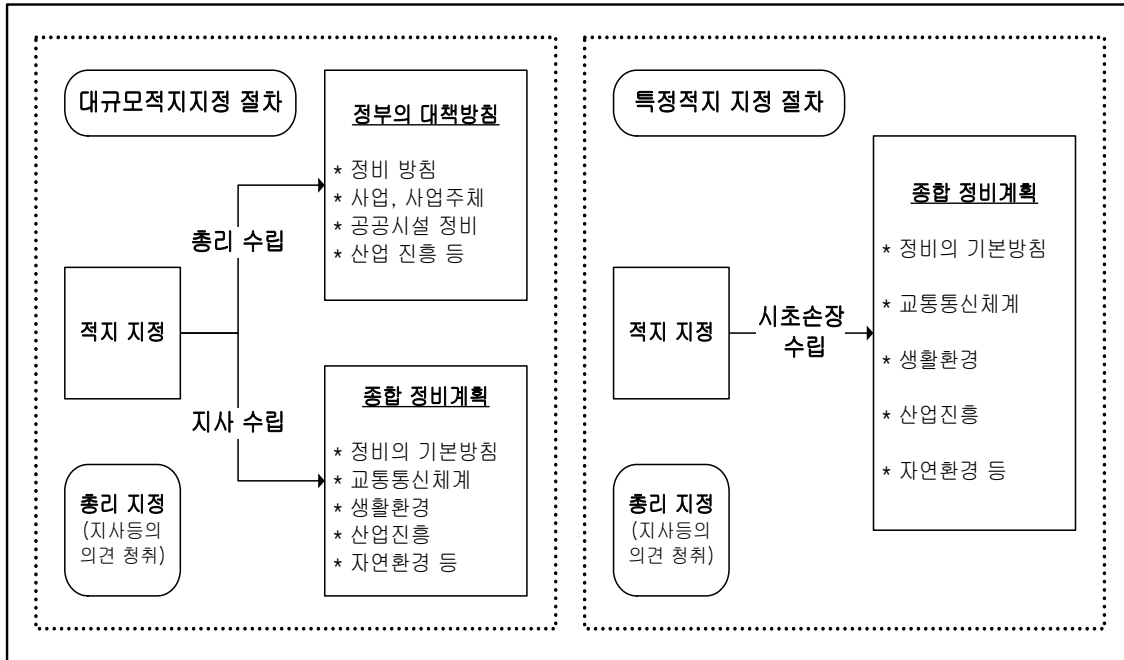
자료: 内閣部 『政府、県及び地元の取組状況について』 (www8.cao.go.jp/okinawa/7/atoj/120531atoj2.html) 참조.

<그림 4> 오키나와현의 미군반환지 관리체제도

- 구체적으로 동 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오키나와 현 및 관계시정촌의 적지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대책을 지원하고, 대규모 적지(대규모진흥 거점 주둔군용지 적지)와 특정적지(특정진흥주둔군용지 적지)를 지정함. 오키나와현과 관계시정촌은 적지이용계획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의향을 파악하며,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또한, 대규모 적지와 특정적지는 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일본총리가 지정하며, 각 적지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에 의거함. 즉, 대규모적지가 지정되면, 정부의 대책방침은 총리가,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은 오키나와현 지사가 수립함. 그리고 특정적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해당 시정촌장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특별조치법에서 규정된 일부 사항은 2002년 7월에 작성된 “오키나와 진흥계획”으로 구체화 됨.7) 동 계획은 적지이용계획의 조기 수립, 반환후 조속한 사업 착수, 신속한 원상회복, 그리고 공공 및 공익시설정비용지의 선행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 “오키나와진흥 계획”에 근거하여 적지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지대책협의회”와 “적지

7) 内閣部, 『沖縄振興計画』 (2002. 7.10).

관계시정촌연락 및 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업무를 조정하도록 함(<표 4> 참조)



자료: 内閣部, 「駐屯軍用地の利用の促進及び円滑化のための特別措置」, 『沖縄振興特別措置法のあらまし』(2002) 참조

<그림 5> 대규모 적지 및 특정적지 지정 및 이용계획수립 절차

- 그리하여 2002년 8월에는 오키나와 진흥계획에서 규정한 “적지관계시정촌(跡地關係市町村) 연락 및 조정회의”가 발족됨.⁸⁾ 동 회의는 적지이용의 촉진과 관련된 오키나와현과 적지관계시정촌과의 연대, 적지대책협의회의에의 적지관계시정촌의 의견반영, 그리고 업무 연락 및 조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 이를 위해 동 회의에는 오키나와현(沖縄縣) 지사, 나하시(那覇市) 시장, 기노완시(宜野灣市) 시장, 오키나와시(沖縄市) 시장, 온나무라(恩納村) 촌장, 킨초(金武町) 정장, 요미탄손(讀谷村) 촌장, 차탄초(北谷町) 정장, 기타나가구스쿠손(北中城村) 촌장 등 우리의 도지사, 시장, 읍면동장에 해당하는 지자체장들이 참석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오키나와진흥계획”에서 규정한 또 하나의 협의체로서 “적지대책협의회”는 2002년 9월 편성됨.⁹⁾ 동 협의회는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장관(沖縄及北方對策担当長官)”을 의장으로 하고 오키나와현 지사와 적지관계시정촌(跡地關係市町村) 촌장이 참여하여,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적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구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오키나와현, 그리고 관련 시정촌이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 동 “적지대책협의회”는 2000년 5월에 설치한 “적지대책준비협의회”를 대신하는 기구로서, 차탄초(北谷町)장이 참석범위에 추가됨

8) 内閣部, 『跡地關係市町村連絡・調整會議設置要項』(2002. 8.20).

9) 内閣部, 『跡地對策協議會設置要綱』(2002. 9.10).

<표 16> 오키나와현내 적지이용관련 연표

연도	내용
1996.12	○ SACO최종보고서(후텐마비행장 이전조건부 반환 합의)
1999.12	○ 주둔군용지적지이용 촉진 및 원활화 등에 관한 방침 제정
2000.2	○ 내각내정심의실 오키나와담당실에 적지대책그룹 신설, 그룹 리더 배치 ○ 적지대책프로젝트팀신설 - 참석: 15개 관계부처과장 및 오키나와현진흥개발실장 ○ 오키나와현청에 설치된 오키나와현 군용지적지이용촉진연락회의 보강 - 참석: 오키나와현청 관련 부장 및 국장 ○ 기노완시청에 기노완시군용지적지개발프로젝트팀 설치 - 참석: 기노완시청 관련부장 및 국장
2000.5	○ 적지대책준비협의회 발족 - 목적: 적지이용촉진 및 원활화 보장 등 종합적 조정 - 참석: 내각관방장관, 오키나와(沖繩) 개발청장관, 오키나와현(沖繩県) 지사, 기노완시(宜野灣市) 시장 - 부설조직: 연락회의
2002.4	○ 오키나와진흥 특별조치법 제정 - 군용지관련 : 적지이용의 기본원칙과 재정 조치, 대규모적지에 대한 국가의 대책, 대규모 적지 및 특정적지에의 급부금 지급 사항 등 규정 - 대규모적지 * 계획적인 개발정비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원상복구 및 개발에 장기간 필요, 오키나와지역 진흥의 거점이 되는 토지 * 반환지의 면적이 3km ² 이상으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지와 인접한 토지 - 특정적지 * 개발정비를 위해 원상회복에 상당기간을 요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정비가 오키나와 진흥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토지 * 0.05km ² 이상인 반환지
2002.7	○ 오키나와진흥계획 결정 - 조정기관(적지대책협의회, 적지관계시정촌연락, 조정회의) 설치 - 적지이용계획의 조기 수립, 반환후 조속한 사업착수, 신속한 원상회복, 공공공익시설정비용지의 선행취득 등 규정
2002.8	○ 적지관계시정촌 연락 및 조정회의 발족 - 목적: 적지이용 촉진관련 오키나와현과 적지관계시정촌과의 연대 및 적지대책 협의회의에 적지관계시정촌의 의견반영, 연락 및 조정 도모 - 참석: 오키나와현(沖繩県) 지사, 나하시(那覇市) 시장, 기노완시(宜野灣市) 시장, 오키나와시(沖繩市) 시장, 온나무라(恩納村) 촌장, 킨초(金武町) 정장, 요미탄손(讀谷村) 촌장, 차탄초(北谷町) 정장, 기타나가구스쿠손(北中城村) 촌장
2002.9	○ 적지대책준비협의회를 적지대책협의회로 개칭 - 목적: 오키나와현과 적지관계시정촌간 보다 긴밀한 연대 도모, 적지이용관련 과제해결 대책 추진 - 참석: 오키나와 담당장관, 오키나와현 지사, 적지관계시정촌 대표 (기노완시(宜野灣市) 시장, 차탄정(北谷町) 정장)

자료: 沖繩縣知事公室 『跡地利用』 (www.pref.okinawa.jp/kichitochi/index.htm) 참조작성.

4. 시사점

- 일본은 방위시설 취득과 시설주변 대책 관련 법규를 이미 1970년대 중반까지 완료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설 주변정비 및 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제도는 향후 기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참고가 될 것임
- 또한 일본이 택하고 있는 훈련 시에 한정된 제한수역의 설정, 훈련피해에 대한 다양한 피해보상제도는 군사시설보호에 있어서 위민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임

- 일본 방위청은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 배려 조치로서 이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고 특별히 소음문제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안정적인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민의 지지확보가 요구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참고할 가치가 큼
- 일본의 기지관련 민원은 공해방지대책 요구, 지역개발 사업 지원 등 경제적 요구, 미군의 군사활동을 저지하는 정치적 요구, 토지반환 및 미군기지 철폐요구 등으로 대별되고 이들은 시대별로 관련 당사자의 개인적 요구에서 관련자들의 집단적 요구로, 비 관련자가 참여한 지역 민원으로 확대되고 법정소송제기 및 지방의원 선거에의 영향 등으로 확대 전개됨
 - 이는 그 내용과 제기 단계에서 지자체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우리에게 향후의 군 관련 민원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평가됨
- 따라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법규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임
 - 현재의 민원 담당부서를 보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 활동에 의한 민간 및 지자체의 피해와 손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 기지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의 설치, 녹지대 및 완충지대의 구축 등 피해방지 시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지역단체 및 개인의 장애제거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방위시설 및 특정방위시설 관련 시군을 설정하여 이 지역의 공공 단체에 대해 특정방위시설주변정비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된 군사기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이 좋은 예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 접경지역 10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주기적으로 군사기지 관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이전 적지활용 계획의 수립에서도 지역의 특성, 기존 군사기지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카나가와현의 경우 주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였으며, 이용 계획수립에서도 공모전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지 활용계획 수립에서 중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의 1/3을 유보지로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적지계획 수립에서도 단기적인 측면이 아닌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지활용 계획을 수립

해야 할 것이며, 수요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일정 부분의 유보지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현에만 해당되는 오키나와진흥 특별조치법(2002년)을 제정하고 있음. 동법은 국가, 현, 그리고 적지관계시정촌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적지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적지이용의 기본원칙, 재정적 지원, 대규모적지에 대한 국가의 대책과 방침, 대규모 적지 및 특정 적지에 대한 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보다 경제적 열위에 있으면서도 미군기지가 집중 입지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상황이 유사함. 우리나라에서도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지원 외에,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접경지역 진흥 특별조치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